

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573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4. 9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2. 9. 2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3. 3. 20. 접수 제2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는 2012. 1. 30. F 주식회사(이하 'F'라고 한다)와 사이에 3,000,000원을 연이율 36.5%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F로부터 3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(이하 '이 사건 대출금'이라고 한다).

나. G 주식회사(이하 'G'라고 한다)는 2013. 6. 28. F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E를 상대로 2015. 6. 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9916호로 5,422,326원과 그중 2,691,784원에 대하여 2015. 5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.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(이하 '이 사건 제1지급명령'이라고 한다)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5. 7. 7. 확정되었다.

다. 원고는 2017. 9. 11. G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. 3. 2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차전111099호로 13,043,486원과 그중 2,691,784원에 대하여 2023. 2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.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(이하 '이 사건 제2지급명령'이라고 한다)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23. 3. 17. 확정되었다.

라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은 E의 부친인 H의 소유였는데, H은 2022. 9. 24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I(상속분 3/17), 자녀 J, K, L, 피고, M, N, E(상속분 각 2/17)가 있었다.

마. I, J, K, L, 피고, M, N, E는 2022. 9. 24.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고 한다)을 하였고, 피고는 2023. 3. 20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쳤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1, 2, 6 내지 1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관련법리
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4다208315 판결 등 참조).

나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원고가 양수한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었으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E와 F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2. 1. 30.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.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최종 변제일이 2012. 12. 14.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종 변제일인 2012. 12. 14.이 된다고 할 것인데, F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G가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5. 6. 9.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5. 7. 7.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제1지급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사건 제1지급명령 확정일인 2015. 7. 7.이 되고,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2025. 7. 7.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,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[원고가 위 2025. 7.

7. 이전인 2023. 3. 21.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23. 3. 17.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제2지급명령에 의하여서도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.]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4호증의 기재, 국토교통부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(㎡당 11,500원)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이 454,182원¹⁾ 상당인 사실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,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E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E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E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라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분 상당인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구세희

별지

1) 이 사건 부동산 면적 335.7㎡ × 11,500원 × E의 상속지분 2/17, 원 미만 버림.